

●고용노동부령 제224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1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입탈퇴 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 중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1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의 사업장란 중 “우편번호(-)”를 “우편번호()”로 하고, 같은 쪽 구분란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자격취득일”을 “자격취득일(YYYY.MM.DD)”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의 공통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의 자격취득 부호 등의 고용보험·산재보험란 중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07)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4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5쪽의 피부양자란 중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등록일”을 “등록일(YYYY.MM.DD)”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의 제3호 중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9개) 직종 현황”을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을 “제1쪽”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제2쪽”으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중전의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5. ⑧ 직종코드(건설 관련 직종은 아래 세부 직종코드 중 해당 직종코드를 적으며, 그 밖의 직종일 경우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관련 직종 세부 직종코드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각 월의 근로자수 및 60세 이상 근로자수에서 제외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
- 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3)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4)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중 “처리기간 : 10일”을 “처리기간 : 10일(유의사항 참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다음에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과정별로 훈련이 종료된 후 해당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실제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훈련 종료 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 중 “처리기간 : 10일”을 “처리기간 : 10일(유의사항 참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다음에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유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과정별로 훈련이 종료된 후 해당 훈련을 받은 사람을 실제 고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훈련 종료 후 90일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850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에 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쪽)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5개) 직종현황

0. 경영·사무·금융·보협직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편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 관리직(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1 여행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직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생산직
	012 행정·경영·금융·보협 관리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532 식당 서비스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542 경비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21. 교육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02. 경영·행정·사무직		22. 법률직	562 점점·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03. 금융·보협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23. 사회복지·종교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6. 섬유·의복·생산직
	022 경영·인사 전문가	24. 경찰·소방·교도직	61. 영업·판매직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5. 군인	62. 운전·운송직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3. 보건·의료직	63. 건설·채굴직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30. 보건·의료직	70. 건설·채굴직		
	026 경영지원 사무원	301 의사·한의사 및 치과의사	7. 건설·채굴직		
	027 회계·경영 사무원	302 수의사	70. 건설·채굴직		
03. 금융·보협직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303 약사 및 한약사	70. 건설·채굴직		
	029 인쇄·교육·상업·통계·서비스·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304 간호사	70. 건설·채굴직		
		305 영양사	70. 건설·채굴직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70. 건설·채굴직		
		307 보건·의료 종사자	70. 건설·채굴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3.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공학 기술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4. 건설·채굴 연구개발 및 공학 기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5. 제조 연구개발 및 공학 기술직	14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4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43 소프트웨어 개발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4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4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46 통신·방송·영상 장비 기사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5. 제조 연구개발 및 공학 기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5. 제조 연구개발 및 공학 기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별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2쪽)

0. 경영·사무·금융·보협직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 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직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822 판금원 및 채관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협 관리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4 용접원 및 도금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54. 경호·경비직		831 전기·전자·기계·설비·기기 설치·수리원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2 전기·전자·기계·설비·기기 설치·수리원	
022 경영·인사 전문가		542 경비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직원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4 전기·전자·설비·기기 설치·수리원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35 전기·전자·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36 전기·전자·부품·제품 조립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561 청소·방역 및 기타 서비스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생산직	
027 회계·경영·사무원		562 컴퓨터·주변기기 및 기타 서비스 단속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56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2 방송·통신·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64 경찰·소방·교도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03. 금융·보협직		565 금융·보험 전문가		851 석유·화학·비금속 기공장치 조직원	
031 금융·보험 전문가		566 군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032 금융·보협 사무원		567 보건·의료직		853 환경관련 장치 조직원	
033 금융·보협 영업원		568 보건·의료 전문가		86. 섬유·의복·생산직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569 보건·의료 전문가		861 섬유·의복·기계·설비·기기 제조·조립원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57. 보건·의료 전문가		862 패터닝·재단사 및 재봉사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570 보건·의료 전문가		863 의복·제조원 및 수선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571 보건·의료 전문가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립원 및 조립원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572 보건·의료 전문가		87. 식품·가공·생산직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573 보건·의료 전문가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574 보건·의료 전문가		872 식품·가공·기계·설비·기기 조립원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575 보건·의료 전문가		873 식품·가공·기계·설비·기기 조립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576 보건·의료 전문가		88. 인쇄·복제·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577 보건·의료 전문가		881 인쇄·복제·사건현상기 조직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578 보건·의료 전문가		882 복제·필름·종이 생산기계 조직원	
135 정보보안 전문가		579 보건·의료 전문가		883 가구·복제품 제조·수리원	
136 통신·방송·영상 장비 기사		580 보건·의료 전문가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581 보건·의료 전문가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82 보건·의료 전문가		89. 제조 단속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583 보건·의료 전문가		890 제조 단속 종사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84 보건·의료 전문가		9. 농림어업직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85 보건·의료 전문가		90. 농림어업직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86 보건·의료 전문가		901 작물재배 종사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87 보건·의료 전문가		902 낙농·사육 종사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88 보건·의료 전문가		903 임업 종사자	
156 석유·화학 기술자 및 시험원		589 보건·의료 전문가		904 어업 종사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90 보건·의료 전문가		905 농림어업 단속 종사자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4쪽)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금속·단조·주조·용접·도장·등)	
01. 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직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822 판금원 및 제판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4 용접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01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531 주방장 및 조리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54. 경호·경비직		831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2 전기·전자 장치 조직원	
022 경영·인사 전문가		542 경비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직원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4 전기·전자 설비 조직원	
024 광고·조사·장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생산직	
027 회계·경리 사무원		562 집합·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속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미사·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61. 영업·판매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03. 금융·보험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증권인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직원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2 영업 및 상품중개인		852 고분·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032 금융·보험 사무원		613 텔레마케터		853 환경관련 장치 조직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615 판매 종사자		861 섬유·제조·가공 기계 조직원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616 매장 계산원 및 매도원		862 패턴사, 제단사 및 재봉사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속 종사자		863 의복·제조원 및 수선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운송직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직원 및 조립원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87. 식품·가공·생산직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2 자동차 운전원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공학 기술직		623 물품이동장치 조직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2 식품 가공 기계 조직원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직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7. 건설·채굴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70. 건설·채굴직		881 인쇄·목재·목재·공예 생산기계 조직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2 목재·필교·공예 생산기계 조직원	
135 정보보안 전문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3 가구·목제품·제조·수리원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03 배관공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14. 건설·채굴 연구개발 및 공학 기술직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5 하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89. 제조 단속직	
15. 제조 연구개발 및 공학 기술직		706 건설·채굴 단속 종사자		890 제조 단속 종사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 설치·정비·생산직		9. 농림어업직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90. 농림어업직	
153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901 작물재배 종사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155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직원		903 임업 종사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4 방·난방·설비 조직원		904 어업 종사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5 자동차·도량·산업·용도·분류 조직원		905 농림어업 단속 종사자	
15. 제조 연구개발 및 공학 기술직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 연월일이 다른 경우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고용보험은 7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우편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일련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상실 연월일 (YYYY.MM.DD)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부호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여부	상실 부호	연간 보수 총액		상실 사유	구체적 사유	구분 코드	해당 연도 보수 총액
								해당 연도 보수 총액	연간 보수 총액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희망 []							

위와 같이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신고인 · 확인인(사용자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 × 210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 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 같은 사람의 4대 사회보험의 상실일자가 다른 경우 상실 연월일만에 모두 함께 기재하되, 해당 칸 안에서 줄을 달리하고 괄호로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예) 201x.xx.xx (고용보험)
201x.xx.xx (건강보험)

작성방법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1.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예) - 퇴직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1월30일/1월31일, - 사망일/상실일: 2월1일/2월2일
2. 국민연금의 경우 중 자격 상실 사유가 사업장 간의 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 취득일인 전일일을, 상실 부호가 6·15·16·20인 경우에는 해당 일을 적습니다.

3. 건강보험의 경우 중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급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예)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월5일/1월5일

<상실 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 상실(국외 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5.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합정국 연금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21. 무포수 대표이사 22. 근로자 제외

1. 상실 부호 22. 근로자 제외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생업 목적이 아닌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초일에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때에는 "초일 취득·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란의 희망"]"에 "√" 표시를 합니다.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급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직종 제외 등)<13>

1.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지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변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지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⑥계와 ⑧계외 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⑩-10(간근로수당과 ②비과세소득 계 등에 지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신입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2.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해당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지격상실 및 확인 통지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7)에 직종현황

(제3쪽)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제조·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 관리직(임원·부서장)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복제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1 여행 서비스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822 판금원 및 주조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21. 교육직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4 용접원 및 도금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2 학교 교사	53. 음식 서비스직	825 도장원 및 도금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4 문화·기술·예능 강사	532 식당 서비스원	
02. 경영·행정·사무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4. 경호·경비직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22. 법률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831 전기공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542 경비원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027 회계·경영 사무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562 집합 주택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속 종사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4. 경찰·소방·교도직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생산직
029 안배·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03. 금융·보험직	25. 군인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031 금융·보험 전문가	250 군인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032 금융·보험 사무원	3. 보건·의료직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30. 보건의료직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852 고분·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613 텔레마케터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615 판매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16 매장 계산원 및 대표원	861 섬유·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속 종사자	862 의복·제단사, 제단사 및 제복사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302 수의사	62. 운전·운송직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303 약사 및 한약사		864 제회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304 간호사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305 영양사		87. 식품·가공·생산직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307 보건·의료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135 정보보안 전문가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 건설·채굴직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6 통신·방송·음향 장비 기사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70. 건설·채굴직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11 작가·통번역가	701 건설구조 기능원	88. 인쇄·복제·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702 건축마감 기능원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413 학예사·사자·기록물관리사	703 배관공	882 목재·합판·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415 디자이너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706 건설·채굴 단속 종사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8. 설치·정비·생산직	89. 제조 단속직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90 제조 단속 종사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9. 농림어업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서비스직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90. 농림어업직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812 운송장비 정비원	901 작물재배 종사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1 미용 서비스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814 방·난방·설비 조작원	903 임업 종사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5 자동차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904 어업 종사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905 농림어업 단속 종사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앞쪽)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	③명 칭	④전화번호	
	⑤소재지		
⑥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인 경우에만 해당)			
피보험자 (이직자)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주 소	⑩휴대전화번호	
⑪피보험자격취득일 (입사일)		⑫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⑬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구분 코드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이직일 포함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만 월별 작성)	⑮보수지급 기초일수	⑰기준기간연장 (아래 사유 코드 참조)	사유 기간
~		<기준기간 연장사유 코드> 1. 질병·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출산·육아 4. 기타 사유	
~		평 균 임 금 산 정 명 세	
~		⑱임금계산기간	부터 까지
~		⑲총 일수	일 일 일 일 일 일
~		기본급	
~		⑳그 밖의 수당	
~		상여금	
~		연차수당	
~		기타	
~		㉑통상임금	원
~		㉒기준보수 *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만 기재	원
⑳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㉓1일 소정근로시간	☐ 4시간이하, ☐ 5시간, ☐ 6시간, ☐ 7시간, ☐ 8시간이상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확인일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장명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본 이직확인서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직하는 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직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 본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유무 판단에 필요한 것이므로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현황 등을 정확히 적어야 하며, 거짓으로 적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⑬란의 이직사유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상 상실사유와 동일한 의미로, 수급자격 여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이므로 구분 코드란에는 아래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적고, 구체적인 이직사유에 대하여 13자 이상 적습니다.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 > ※ 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2. ⑭란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적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기간까지(통상 6~7줄) 소급하여 적습니다.(예: 2000. 4. 20. 이직한 경우 2000. 4. 1. ~ 4. 20, 2000. 3. 1. ~ 3. 31., 2000. 2. 1. ~ 2. 29., 2000. 1. 1. ~ 1. 31. ... 등으로 기재).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참여한 기간만을 적습니다.
3. ⑮란의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을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4. ⑯란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⑮란에 각각 적은 보수지급일수의 총계를 적습니다.
5. ⑰란의 기준기간연장 "사유"란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해당 번호로 적고, "기간"란은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적습니다. 이 경우 휴업 또는 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⑱란은 평균임금(※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함) 산정대상기간을 임금지급 대상기간별로 구분하여 적고, 구분 기재된 기간의 일수를 ⑲란에 적습니다. ⑲란 중 그 밖의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외의 수당을 적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 전 12개월 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3/12)하여 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산정대상 전(全)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는 ⑳~㉑란까지는 적지 아니하며, ㉒란의 기준보수만 적습니다.
7. ㉑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습니다.
8. ㉒란은 ⑱란의 평균임금 산정대상이 되는 모든 기간의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납부한 경우에만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㉓란의 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습니다.
9. ㉓란은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하여진 이직 직전의 단위기간 동안 총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되, 일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및 일(日) 외의 단위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경우에는 올림한 시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선택합니다.(예: 6.01시간→7시간으로, 5.01시간→6시간으로 선택합니다. 다만, 7시간 초과 시는 8시간으로, 4시간 이하는 4시간으로 선택합니다.)

(제3쪽)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BE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제조·설치·정비·생산직 (금속·제조·주조·용접·도장 등)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 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822 관공원 및 정비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21. 교육직			823 단조원 및 주조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53. 음식 서비스직		824 용접원 및 도금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212 학교 교사	531 주방장 및 조리사		825 도장원 및 도금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3 유치원 교사	532 식당 서비스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214 문관·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4. 경호·경비직		83.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22. 법률직			831 전기공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221 법률전문가			832 전기·전자 기계 설치·수리원	
022 경영·인사 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834 전기·전자 장비 조작원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23. 사회복지·종교직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027 회계·경리 사무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84. 정보통신·설치·정비·정비직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24. 경찰·소방·교도직	562 침침·후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속 종사자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029 안내·교과상담·통제·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25. 군인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85. 화학·환경·설치·정비·생산직	
03. 금융·보험직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031 금융·보험 전문가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032 금융·보험 영업원	25. 군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업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86. 섬유·의복·생산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3. 보건·의료직	615 판매 종사자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 보건의료직	616 매장 계산원 및 대표원		862 패터너·재단사 및 재봉사	
		617 판매 및 기타 판매 단속 종사자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운송직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41. 예술·디자인·방송직	622 자동차 운전원		87. 식품·가공·생산직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131 컴퓨터·드래프트·통신공학 기술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 인쇄·복제·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135 정보보안 전문가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2 목재·합판·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136 통신·방송·음향 장비 기사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1.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9. 제조 단속직	
				890 제조 단속 종사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9. 농림어업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90. 농림어업직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902 낙농·사육 종사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03 임업 종사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04 어업 종사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05 농림어업 단속 종사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전화번호			FAX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	----	----

하수급인 관리번호	※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의 경우만 해당함
--------------	-----------------------------

일련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			
			연월일 (YYYY.MM.DD)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건강보험증 수령지	[]사업장 주소지	[]해당 직장가입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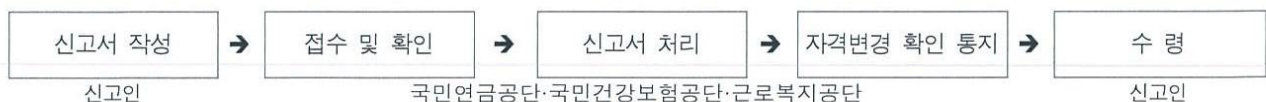
유의사항

※ 근무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를, 고용·산재보험은 "피보험자 전근신고서"를 별도의 해당기관 서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내용변경부호] :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3.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국민연금만 해당) 4. 자격취득일자(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5. 자활근로종사자의 보장자격(생계급여 수급자 ⇄ 급여특례·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만 해당 6. 휴직 종료일(고용·산재만 해당)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의2서식]

년 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 해당 [] 비해당	
	④소재지	□□□-□□□□ (전화번호: 담당자:)				
	⑤업종명	(주생산품:)	⑥업종코드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현황	월별	근로자수	60세 이상 근로자수 (고용기간 1년 이상)		
	월	명	명		
	월	명	명		
	월	명	명		
	월 평 균	⑦	명 ⑧	명	
	⑨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율[$(\textcircled{8}/\textcircled{7}) \times 100$]		%		
	⑩기준60세 이상 근로자수 (⑦×업종별지원기준율)	명	⑪지원한도 60세 이상 근로자수 (대규모기업: ⑦×0.1) (우선지원대상기업: ⑦×0.2)	명	
	⑫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⑧-⑩)		명		
⑬지원 대상자 수 (⑫>⑪이면 ⑪, ⑫<⑪이면 ⑫)		명			

신청	⑭분기당지원금 / 인	원	⑮신청액(⑬×⑭)	원
내용	⑯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⑰신청하기 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고용조정에 따른 근로자 이직 여부 [] 예 [] 아니오				
⑱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일자리안정 자금) [] 예 []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2.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사업 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 람	담당	과장	청장·지청장
처리	전체 근로자수		명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초과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지원한도인원		명	다수고용장려금 등 지급 여부			
	지원 60세 이상 근로자수		명	지급 결정액		원	
결재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 연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중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의 지원금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및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국고용직업분류(KECO)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서식에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 단서 중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초소형승용자동차(이하 “초소형승용자동차”라 한다), 초소형화물자동차(이하 “초소형화물자동차”라 한다) 및 이륜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8호 중 “이륜자동차”를 “초소형승용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이하 “초소형자동차”라 한다)와 이륜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9호 중 “이륜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600킬로그램을, 초소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750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단서 중 “복륜(複輪)인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복륜(複輪)인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로 한다.

제13조제3항제5호 중 “저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는 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다 클 것”을 “최고속변속단수에서의 제동효과는 최고속변속단수 외의 단수에서의 제동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